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1. 18 선고 2021가단755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2.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0. 3. 17.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함)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2020. 3. 18. 접수 제57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19. 기준 D에 대하여 67,649,703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2020. 3. 17.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20. 3. 18.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와 D는 1995. 3. 7.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협의이혼을 하고, 2020. 5. 28. 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과 갑 제2,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D 사이의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 일자가 이혼신고 일자보다 앞서지만 약 70일 정도에 불과하다. 통상의 이혼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 또는 그 즈음에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와 D의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시가는 약 80,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전 설정된 E조합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42,900,000원을 고려하면(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함),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가치는 약 40,000,000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와 D의 혼인기간이 25년을 넘는데, 피고가 D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이외에 다른 재산을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

별지